

사외이사후보자추천위원회 운영규정

삼성중공업 주식회사

제 1 조 (목 적)

이 규정은 관계법령과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따라 회사의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구성,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구 성)

1. 위원회의 위원(이하 "위원"이라 한다)은 이사회에서 이사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이사들 중에서 선임하되, 관계법령과 정관에서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는 자로 정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.
2.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한다.
(2024.3.21 改定)

제 3 조 (위원장)

1. 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의로 선임한다.
2.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고, 위원회를 대표한다.
3.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4 조 (위원의 임기)

위원의 임기는위원의 이사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.(2021.3.19 改定)

제 5 조 (해임 및 충원)

1. 위원의 해임에 관한 결의는 이사회에서 참석이사 총수의 과반수 이상의 결의로 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.
2. 위원의 해임·사임·임기만료 또는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위원회에 결원이 생길 경우 최초로 소집되는 이사회에서 결원된 위원을 충원한다.

제 6 조 (위원회의 소집)

1.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2.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를 정하고, 회의의 1일전에 이를 각 위원에게 문서, 전자문서, 구두, 기타 방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단,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

제 7 조 (결의방법)

위원회 결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한다.

단, 관계법령의 허용범위내에서 동영상 또는 유무선 통신장비들을 이용하여 위원회를 진행할 수 있다.

제 8 조 (의사록)

1.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2.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과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하는 이유를 기재하고,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

제 9 조 (권 한)

1. 위원회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주주총회에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한다.
2. 위원회는 정관 제25조의 2 및 관계법령에 따라 결격이 없는 후보자를 추천해야 하며 회사의 주요 투자자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.

(2022.12.23 改定)

제 10 조 (통지의무)

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결의일로부터 2일이내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 11 조 (간 사)

1. 위원회에 간사를 두고, 인사지원실장을 이에 보임한다.
2.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, 위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전반을 처리한다.

제 12 조 (기 타)

1. 이 규정이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 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.
2.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의결에 의한다.

附 則

1. 이 규정은 2001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2. 이 규정은 2012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3. 이 규정은 2021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4. 이 규정은 2022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5. 이 규정은 2024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.